

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53호 2003. 12. 13)

총 무 위 원 회

2003. 12. 20(토)

1. 심사경과

가. 2003. 12. 13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3. 12. 13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3. 12. 18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립)

가. 개정이유

-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(안 제4조의2)
 - 지원계획 수립·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심의 → 결과 통보
- (2)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4조의3, 제4조의4)
 - 구성 : 지방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공무원 등 9인 이내
 - 기능 :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
- (3)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(안 제9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, 임의보조단체 구분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과 대상 단체 지원금액 등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